학교 폭력 예방 교육

가.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

학교폭력이란?	유형	
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	신체적 폭력	때리기, 밀기, 찌르기, 차기 등
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 모욕, 공갈, 강요, 강제적인 심부름, 성폭력, 따돌림, 사이 바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	언어적 폭력	놀리기, 비하하기, 욕하기, 모욕하기, 위협하 기, 소문 퍼트리기 등
	금품갈취	돈이나 물건 요구 등
	강요	강제적 심부름, 강요 등
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	성폭력	언어적, 비언어적 성폭력
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	따 돌 림	따돌림
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조)	사이버 폭력	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,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
나. 학교폭력 피해자, 가해자의 징후

학교폭력 피해자	학교폭력 가해자
 ▶ 옷, 소지품,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린다. ▶ 다친 상처나 멍 자국을 몸에서 발견하게 된다. ▶ 일기장 등에 '죽이고 싶다.' 혹은 '죽고 싶다.' 같은 표현이 있다. ▶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용돈을 달라고 한다. ▶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. ▶ 평소보다 어두운 얼굴 표정으로 수심이 있다. ▶ 친구들과 따로 떨어져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	 ▶ 여러 가지 규칙과 질서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. ▶ 부모나 어른들에게 저항과 분노를 품고 있다. ▶ 힘으로 다른 친구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. ▶ 인내심이 부족하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다. ▶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. ▶ 늦게 귀가 하거나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.

다.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노력해야 할 점

- 부모의 바른 언행으로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.
- 자녀의 대화내용 뿐만 아니라 말투와 표정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.
- 필요 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.
- 컴퓨터, 모바일 폰 등의 정보통신매체를 올바로 사용하게 합니다.
- 용돈이 필요한 이유나 쓰는 곳을 물어 봅니다.
- 1주일에 두 번 이상은 가족끼리 다정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.

아동학대(가정폭력) 예방 교육

1. 아동학대란?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**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**할 수 있는 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<u>아동의 보호자가</u>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(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!)

♣ 아동이란? ☞ 만 18세 미만 (즉, 고등학생도 포함)

2.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내용

학대 유형	학대 내용	처벌
신체적 학대	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 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,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정서학대	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 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,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성학대	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 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,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	 ☞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 ☞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, 아동에게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-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방임·유기	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, 물리적 방임, 교육적 방임, 의료적 방임,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.	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3.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



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특징

-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(30.4%)
-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(23.3%)
- 부부 및 가족갈등 (10.1%)
- 성격 및 기질문제 (8.0%)

출처: 2012년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(보건복지부) ▶매년 학대행위자의 83% 이상이 부모

요인

- ▶방임의 경우, 부모에 의한 발생률 90% 이상
- ▶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

구분

학대자 / 아동 **개인**

사회

정신장애 / **학대경험** / 약물 중독 /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/ 충동 /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

빈곤, 실업 / **사회적 지지** 체계 부족 /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/ 가정폭력 / 부모-자녀 간 애착부족 등

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/ 체벌 허용 /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

결과

- 학대로 인한 사망
- 아동에게 싶은 상처
-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
-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
- 비가해가족의 죄책감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
-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
-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
- 가출
-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
- 학교폭력, 비행, 자살이 증가함
- 약물 남용 및 중독
-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

4. 아동학대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정 및「아동복지법」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(2014. 1.28 공포, 2014. 9.29 시행)

1.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

(학대치사)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(학대중상해) 3년 이상 징역

(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) 형량의 1 / 2 가중 처벌

- 2.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·운영 금지
- 3.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
- 4.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(과태료 500만 상향조정,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)
- 5. 현장조사권 강화 학대행위자 임시조치(친권제한,격리 등) (최장4개월)
- 6.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(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)
- 7.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"피해아동보호명령" 청구 가능

아동학대 신고 의무자

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"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" *단, 누구든지 신고 가능!

- <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>

- ◎ 신고 및 상담
- 경찰청 112
- 안전Dream 아동·여성·장애인 경찰지원센터(www.safe182.go.kr)
- 사이버112(cyber112.police.go.kr)